투자 위험 등급 2 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KTB 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KTB 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 2 호[주식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TB 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 2 호[주식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KTB 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 2 호[주식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ktb.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8 년 9 월 6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8 년 9 월 11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18 년 5 월 21 일(예정)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788-8400, www.i-ktb.com)
각 판매회사 본·지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목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자 요청시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투자요건을 갖춘 자산에 투자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투자요건을 미 충족시에는 소득공제 및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1.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자산 가운데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매각이 용이하지 못하여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으며,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에 등록된 채권에 한하여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3.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변경을 통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KTB리틀빅스타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4.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 : 2018.09.06)

KTB 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 2 호[주식혼합] (C8256)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KTB 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 제 2 호[주식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TB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 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 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 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에 등록된 채권에 한하여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등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그 밖에 신규 IPO 및 유상 증자 관련 주식에 투자		
분류	•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 KTB자산운용주식회사 (02-788-8400)		
모집(판매) 기간	• 2018년 5월 21일(예정)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 2018년 9월 11일	존속 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i-ktb.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A	C
가입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판매수수료		(선취)납입금액의 1.0% 이내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보수 (연, %)	판매	0.50	0.90
	운용 등	0.645(운용 0.60, 신탁 0.03, 일반사무관리 0.015)	
	기타	-	-
	총보수·비용	1.145	1.545
※ 주석사항		1. 기재가 생략된 종류Ae, Ce, CF, CW, S, Ag, Cg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작성기준일 현재 직전 회계기간의 실적 또는 이 투자신탁과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4.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전환수수료는 전환시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5.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15시30분 이전:2영업일 기준가 매입 • 15시30분 경과 후:3영업일 기준가	환매 방법	•15시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15시30분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4영업일 지급
기준가	1.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 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2. 공시방법: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ktb.com),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 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 년 이내)등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그 밖에 신규 IPO 및 유상 증자 관련 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 벤처기업 관련 신주 투자전략

① 공모주(IPO) 투자전략:

· 철저한 상향식 분석기법(Bottom Up Approach)을 통한 투자종목 선정
· 공모 부진에 의한 청약 미달 예상 건에 대해서는 보수적 수요예측 참여 및 가격 결정으로 리스크 관리
· 중장기 투자매력을 보유한 공모주에 대해 과감한 확약기간 설정으로 수익률 기여 극대화 추구
· 철저한 분석에 의한 기간 확약 전략으로 동종 유형 그룹 대비 수익률 차별화 추구

② 비상장주식 및 주식관련사채(CB, BW) 투자전략:

· 우량 벤처기업 발굴
  ✓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탄탄한 현금창출력, 우수한 기술력, 산업 내 독점적 지위, 높은 자산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 선별 투자
  ✓ 코넥스 상장 기업의 경우 2 년 이내에 코스닥 이전상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상장 기업의 경우 2~3 년 이내에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 높고, 투자 후 6 개월 이내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해하기 쉬운 사업구조를 갖춘 종목 투자
  ✓ 기술적인 이해가 어렵고, 산업구조의 변동 예측이 힘든 종목은 편입대상에서 제외

· 까다로운 질적 심사 추구를 통해 투자조건 미달시 편입대상에서 제외

③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신주 투자전략:

· 코스닥, 코넥스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비상장(상환)전환우선주(보통주 포함)
  ✓ 일정 기간 이후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우선주로 전환권 행사 후 장내 매매
  ✓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상환권이 추가된 전환우선주로서 발행사에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 추가

✓ 전환가액의 가격재조정(Refixing)요건을 추가하여 주가 하락에 일정 부분 방어 가능
✓ 비상장회사의 경우, 6 개월 이내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회사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전략

① 상향식 분석기법(Bottom Up Approach)에 기초한 성장주 및 가치주에 대한 선별적 투자

성장주	가치주
· 성장/회복 사이클에서 역동적인 힘을 보유한 작지만 강한 기업에 집중 투자 ✓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수익성 지표가 성장하는 기업 ✓ 차별적 기업 또는 시장점유율 보유기업 ✓ 정부정책 수혜 기업 등	· 역발상을 통해 시장에서 소외된 기업에 투자 ✓ 비교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상대적 PER/PBR) ✓ 이익 창출력 대비 절대적 저평가 기업(저 ROE/ PBR) 등 ✓ 업황개선세가 기대되는 낮은 가동률 기업

■ 자산배분전략

①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 편입비중을 전체 자산의 50%~100% 수준으로 투자하는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전략 실행

② 일부 주가지수 선물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을 활용하여 단기적인 주식시장 변동 리스크를 축소

*** 비교지수(벤치마크)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등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함에 따라 이러한 운용전략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이 되는 국내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4.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현황(2018.08.31현재)		주요 운용 경력 및 이력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김용범	1971년	상무	2개	4,434억	- '01.07~'10.05 삼성자산운용 주식운용 - '10.06~'12.08 KTB 자산운용 주식운용 - '12.09~'13.08 삼성자산운용 주식운용 - '13.09~'16.07 마이다스자산운용 주식운용 - '16.08~현재 KTB 자산운용 주식운용팀
황준혁	1987년	대리	11개	4,093억	- '12.09~현재 KTB 자산운용 주식운용팀
이창행	1969년	상무	56개	8,376억	- '00.02~'09.09 KTB 투자증권·KTB 네트워크 자산운용팀(PEF·메짜닌 등 운용) - '10.05~'15.02 SBI 저축은행 IB 사업부 - '15.03~ 현재 KTB 자산운용 전략투자팀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 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 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 및 공모주 우선배정에 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투자요건을 갖춘 자산에 투자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투자요건을 미충족시에는 소득공제 및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으며, 한정된 물량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주식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보다 기업의 투명성, 신용상태 및 재무구조 측면에서 보다 열위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보다 주식의 가격변동성이 높고 유동성도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일반 주식형대비 높은 변동성을 보이거나 급격한 가치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자산의 일정수준을 코넥스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비교해서 변동성은 높은 반면 유동성은 낮을 수 있어 이에 따른 투자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비상장 주식(신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에서 발행한 비상장 종류주식(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포함), 비상장회사에서 발행한 보통주 또는 종류주식 등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공정가격을 판단하기 힘들어 취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래제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벤처기업 해제후 7년 이내)등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수익증권의 추가매수가 가능한 추가형,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에서 추구하는 전략상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주식, 코넥스 주식 등에 투자함에 따라 상기 자산들은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황 및 운용상황 등의 요인으로 투자신탁 설정이후 수익증권을 추가매수 할 수 없거나, 환매를 신청하여도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적격기관투자자 시장 등록채권 위험	이 투자신탁은 적격기관투자자(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 시장에 등록된 채권에 한하여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적격기관투자자 시장에 등록되어 거래되는 채권은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위험관리 능력이 있는 적격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 공모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투자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변경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KTB리틀빅스타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하 '대표펀드')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신탁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의 절차에 따라 대표펀드로 변경되거나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투자요건을 갖춘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거나 투자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및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등이 발행한 주식 등에** 자산 총액의 50% 이상 투자하므로, 시장변동에 따라 높은 손실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주식투자의 기본속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 3 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시장리스크와 개별기업 리스크로 나누어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행
  - · 예측불가능하고 헤지할 수 없는 시장 리스크에 대해 적극적인 자산배분과 섹터배분 전략으로 리스크 축소
  - · IPO 참여 및 종목 편입시 철저한 리스크 검토와 유니버스 조건 적용으로 재무적/유동성 리스크 최소화
  - · 펀더멘털 이외의 리스크에 대비하여 분산투자 및 종목당 최대 편입비율 준수
  - · 단계적 손실율에 따른 편입종목 모니터링
  - · 비상장 주식에 대해 실적 점검 이외에 상장 추진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Exit전략 관리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내국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 과세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계약기간	3년 이상
세제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인당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
소득 공제 방법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신청서에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판매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그 외의 투자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함
감면세액 추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수익증권 투자일(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수익증권 투자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추징받음.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투자자 본인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i-ktb.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ktb.com)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ktb.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KTB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혼합] (C8256)				
종류(클래스)	종류 A	종류 Ae	종류 C	종류 Ce	종류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8257	C8258	C8259	C8260	C8261

명 칭	KTB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혼합] (C8256)			
종류(클래스)	종류 Ag	종류 Cg	종류 S	종류 CW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8265	C8267	C8264	C826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능)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자금 납입가능)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최초설정시 1 좌당 1 원)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개시일 : 2018 년 5 월 21 일 예정

다.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라.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ktb.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KTB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혼합] (C8256)				
종류(클래스)	종류 A	종류 Ae	종류 C	종류 Ce	종류 CF
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C8257	C8258	C8259	C8260	C8261

명 칭	KTB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혼합] (C8256)			
종류(클래스)	종류 Ag	종류 Cg	종류 S	종류 CW
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C8265	C8267	C8264	C826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 사항
2018.05.21	최초설정
2018.09.11	투자대상자산에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 등록채권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KTB 빌딩 (대표전화 : 02-788-84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2018.08.31현재)		주요 운용 경력 및 이력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김용범	1971년	상무	2개	4,434억	- '01.07~'10.05 삼성자산운용 주식운용 - '10.06~'12.08 KTB 자산운용 주식운용 - '12.09~'13.08 삼성자산운용 주식운용 - '13.09~'16.07 마이다스자산운용 주식운용 - '16.08~현재 KTB 자산운용 주식운용팀
황준혁	1987년	대리	11개	4,093억	- '12.09~현재 KTB 자산운용 주식운용팀

이창행	1969년	상무	56개	8,376억	- '00.02~'09.09 KTB 투자증권·KTB 네트워크 자산운용팀(PEF·메짜닌 등 운용) - '10.05~'15.02 SBI 저축은행 IB 사업부 - '15.03~ 현재 KTB 자산운용 전략투자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혼합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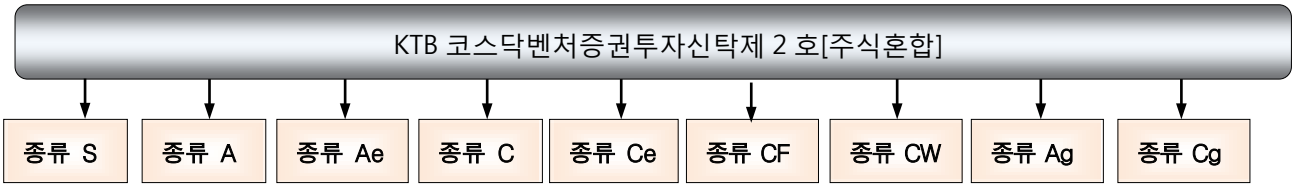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 없음
종류 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종류 C	가입제한 없음
종류 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종류 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특정금전신탁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종류 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종류 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

<보수 및 수수료 차이>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지급비율(%)</th></tr>
<tr><th>선취판매수수료</th><th>후취판매수수료</th><th>환매수수료</th></tr>
<tr><td>종류 A</td><td>납입금액의 1.0% 이내</td><td rowspan="6">-</td><td rowspan="7">90일 미만 이익금의 70%</td></tr>
<tr><td>종류 Ae</td><td rowspan="2">납입금액의 0.5% 이내</td></tr>
<tr><td>종류 Ag</td></tr>
<tr><td>종류 C</td><td rowspan="6">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류 Ce</td></tr>
<tr><td>종류 CF</td></tr>
<tr><td>종류 CW</td></tr>
<tr><td>종류 Cg</td></tr>
<tr><td>종류 S</td><td>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td></tr>
<tr><td>지급시기</td><td>매입시</td><td>-</td><td>환매시</td></tr>
</table>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보수합계
종류 A	0.60	0.50	0.03	0.015	1.145
종류 Ae		0.25			0.895
종류 C		0.90			1.545
종류 Ce		0.45			1.095
종류 CF		0.03			0.675
종류 CW		0.00			0.645
종류 Ag		0.35			0.995
종류 Cg		0.63			1.275
종류 S		0.20			0.845

주)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신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	**주식**	**100% 이하 (단,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는 20% 이하)**	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을 포함하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법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②	**채권**	**50% 미만**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주식관련사채권 제외),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거나 2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주식관련사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어음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④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⑤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⑥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및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⑦	증권 대여	50% 이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⑧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 내지 ③에 의한 차입허용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벤처기업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6 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2. 제 1 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 개월마다 같은 항 각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 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50% 및 1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전 6 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6개월 이내인 상품)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내지 ③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①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②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 가능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파생결합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③	동일법인 발행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⑤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마)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⑦	계열회사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지분증권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⑧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 81 조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투자대상' ④ 내지 ⑧, '나. 투자제한' ② 내지 ⑤, ⑥의 (가) 및 (라)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은 '나. 투자제한' ②, ④ 및 ⑤, ⑥의 (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신탁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 년 이내)등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그 밖에 신규 IPO 및 유상 증자 관련 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관련 신주 투자전략

① 공모주(IPO) 투자전략:

· 철저한 상향식 분석기법(Bottom Up Approach)을 통한 투자종목 선정
· 공모 부진에 의한 청약 미달 예상 건에 대해서는 보수적 수요예측 참여 및 가격 결정으로 리스크 관리
· 중장기 투자매력을 보유한 공모주에 대해 과감한 확약기간 설정으로 수익률 기여 극대화 추구
· 철저한 분석에 의한 기간 확약 전략으로 동종 유형 그룹 대비 수익률 차별화 추구

② 비상장주식 및 주식관련사채(CB, BW) 투자전략:

· 우량 벤처기업 발굴
  ✓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탄탄한 현금창출력, 우수한 기술력, 산업 내 독점적 지위, 높은 자산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 선별 투자
  ✓ 코넥스 상장 기업의 경우 2 년 이내에 코스닥 이전상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상장 기업의 경우 2~3 년 이내에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 높고, 투자 후 6 개월 이내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해하기 쉬운 사업구조를 갖춘 종목 투자
  ✓ 기술적인 이해가 어렵고, 산업구조의 변동 예측이 힘든 종목은 편입대상에서 제외

· 까다로운 질적 심사 추구를 통해 투자조건 미달시 편입대상에서 제외

③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신주 투자전략:

· 코스닥, 코넥스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비상장(상환)전환우선주(보통주 포함)
  ✓ 일정 기간 이후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우선주로 전환권 행사 후 장내 매매
  ✓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상환권이 추가된 전환우선주로서 발행사에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 추가

✓ 전환가액의 가격재조정(Refixing)요건을 추가하여 주가 하락에 일정 부분 방어 가능
✓ 비상장회사의 경우, 6 개월 이내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회사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전략

① 상향식 분석기법(Bottom Up Approach)에 기초한 성장주 및 가치주에 대한 선별적 투자

성장주	가치주
· 성장/회복 사이클에서 역동적인 힘을 보유한 작지만 강한 기업에 집중 투자 ✓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수익성 지표가 성장하는 기업 ✓ 차별적 기업 또는 시장점유율 보유기업 ✓ 정부정책 수혜 기업 등	· 역발상을 통해 시장에서 소외된 기업에 투자 ✓ 비교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상대적 PER/PBR) ✓ 이익 창출력 대비 절대적 저평가 기업(저 ROE/ PBR) 등 ✓ 업황개선세가 기대되는 낮은 가동률 기업

■ 자산배분전략

①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 편입비중을 전체 자산의 50%~100% 수준으로 투자하는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전략 실행

② 일부 주가지수 선물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을 활용하여 단기적인 주식시장 변동 리스크를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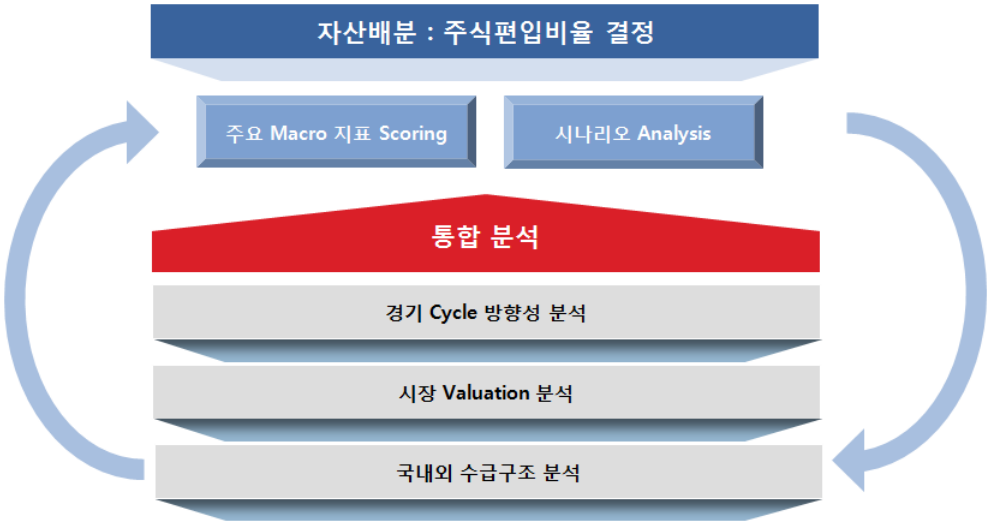

(2)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등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함에 따라 이러한 운용전략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 해당사항 없음**

나. 위험 관리

- 시장리스크와 개별기업 리스크로 나누어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행
  · 예측불가능하고 헤지할 수 없는 시장 리스크에 대해 적극적인 자산배분과 섹터배분 전략으로 리스크 축소
  · IPO 참여 및 종목 편입시 철저한 리스크 검토와 유니버스 조건 적용으로 재무적/유동성 리스크 최소화

· 펀더멘털 이외의 리스크에 대비하여 분산투자 및 종목당 최대 편입비율 준수
· 단계적 손실율에 따른 편입종목 모니터링
· 비상장 주식에 대해 실적 점검 이외에 상장 추진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Exit전략 관리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이 되는 국내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개별 기업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개별 주식 가격의 등락을 초래할 가능성과 개별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큰 금액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의 범위는 무한대로 이 투자신탁에 큰 손실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소득공제 및 공모주 우선배정에 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투자요건을 갖춘 자산에 투자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투자요건을 미충족시에는 소득공제 및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으며, 한정된 물량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주식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보다 기업의 투명성, 신용상태 및 재무구조 측면에서 보다 열위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보다 주식의 가격변동성이 높고 유동성도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일반 주식형 펀드 대비 높은 변동성을 보이거나 급격한 가치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자산의 일정수준을 코넥스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비교해서 변동성은 높은 반면 유동성은 낮을 수 있어 이에 따른 투자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비상장 주식(신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에서 발행한 비상장 종류주식(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포함), 비상장회사에서 발행한 보통주 또는 종류주식 등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공정가격을 판단하기 힘들어 취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래제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벤처기업 해제후 7년 이내)등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수익증권의 추가매수가 가능한 추가형,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에서 추구하는 전략상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주식, 코넥스 주식 등에 투자함에 따라 상기 자산들은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황 및 운용상황 등의 요인으로 투자신탁 설정이후 수익증권을 추가매수 할 수 없거나, 환매를 신청하여도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적격기관투자자 시장 등록채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적격기관투자자(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 시장에 등록된 채권에 한하여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적격기관투자자 시장에 등록되어 거래되는 채권은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위험관리 능력이 있는 적격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 공모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투자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변경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KTB리틀빅스타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하 '대표펀드')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신탁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의 절차에 따라 대표펀드로 변경되거나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투자요건을 갖춘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거나 투자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및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환매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등이 발행한 주식 등에** 자산 총액의 50% 이상 투자하므로, 시장변동에 따라 높은 손실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주식투자의 기본속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 3 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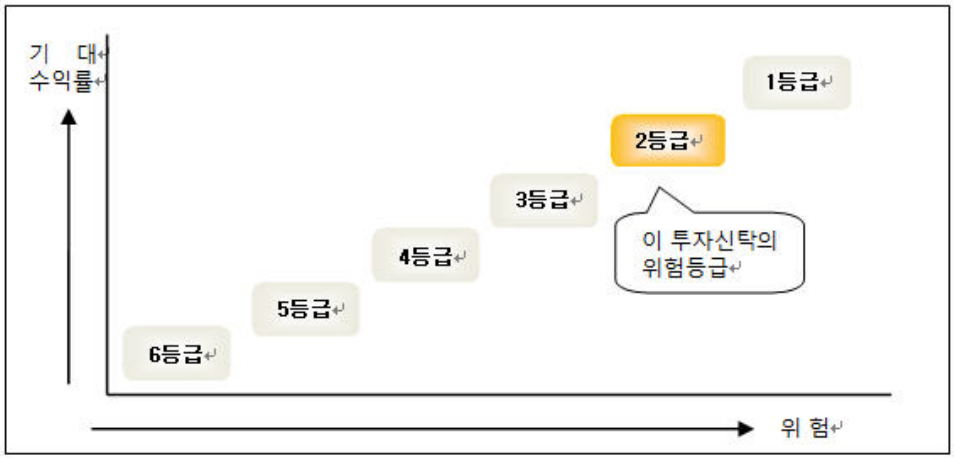

<KTB자산운용회사의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위험정도	상세 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산(실질적으로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산을 포함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상가, 물류센터 등 사용 목적이 특정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담보나 지급보증이 불충분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아파트나 오피스 등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로 투자회수가 용이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하거나 담보가 충분하여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과 동일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상기 투자위험등급 기준은 KTB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단,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집합투자기구(ELF, 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15%초과 25%이하	10%초과 15%이하	5%초과 10%이하	0.5%초과 5%이하	0.5%이하

3.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Commodity,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으로 이 중 각 고위험 자산을 기초자산이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후순위 채권, 주권관련사채권 및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투자등급채권 및 투기등급채권의 구분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기준으로 함)
5.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6.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A- 이상), CP(A1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7.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채권의 경우 해당국가의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8.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10.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11.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 이상향될 수 있습니다.
12.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3. 상기 분류에 따라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에 따라 별도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 없음
종류 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종류 C	가입제한 없음
종류 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종류 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특정금전신탁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종류 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종류 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증권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5시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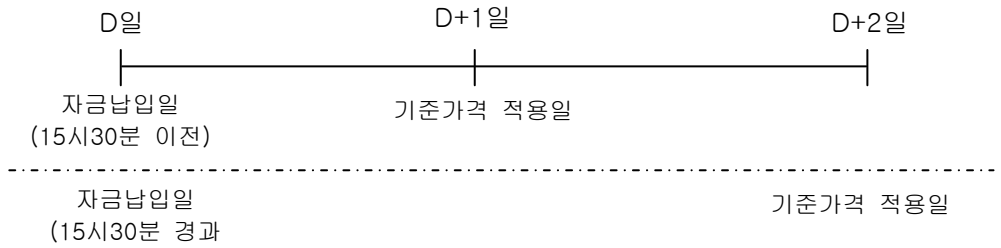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나) **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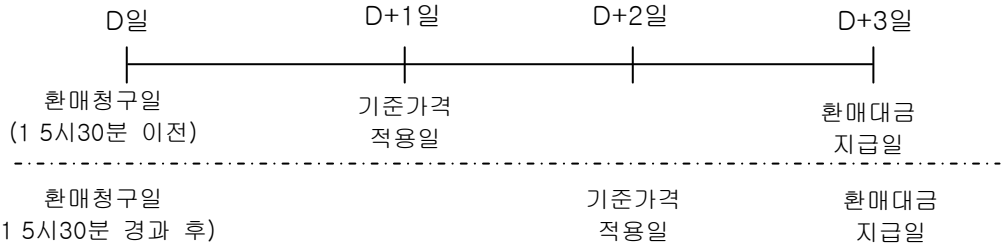

(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라)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환매수수료

잦은 자금유출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환매청구에 따라 보유 증권 등을 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잔류 수익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일정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환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Ae, 종류 C, 종류 Ce, 종류 CF, 종류 CW, 종류 Ag, 종류 Cg, 종류S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에 한 경우에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관련법령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관련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 수익증권 간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일의 다음 영업일의 영업개시 전에 공고 및 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ktb.com),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 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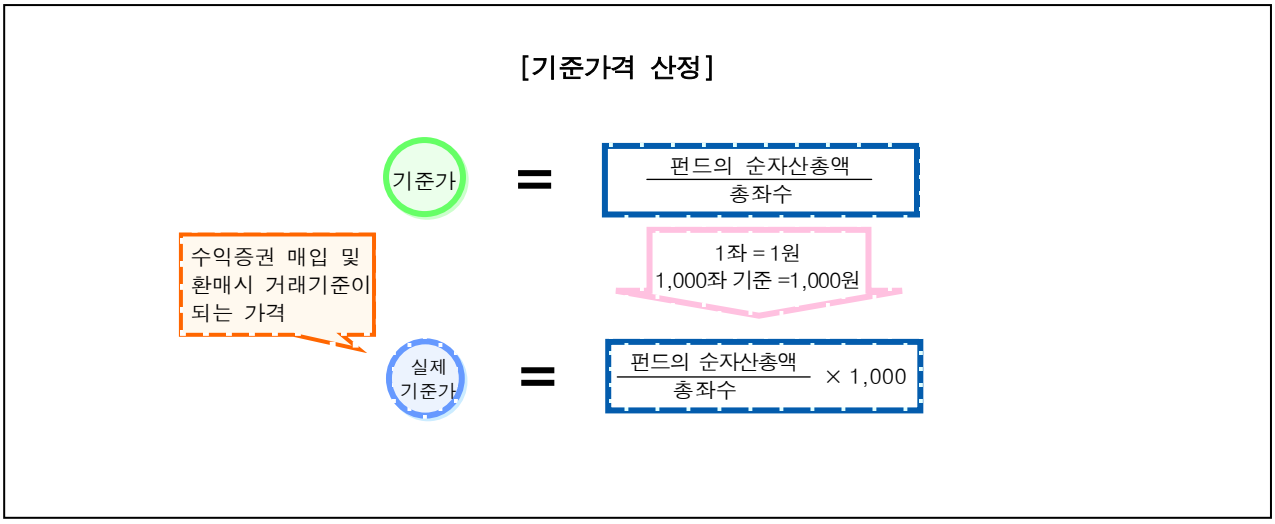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위의 상장채권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지급비율(%)</th></tr>
<tr><th>선취판매수수료</th><th>후취판매수수료</th><th>환매수수료</th></tr>
<tr><td>종류 A</td><td>납입금액의 1.0% 이내</td><td rowspan="8">-</td><td rowspan="9">90일 미만 이익금의 70%</td></tr>
<tr><td>종류 Ae</td><td rowspan="2">납입금액의 0.5% 이내</td></tr>
<tr><td>종류 Ag</td></tr>
<tr><td>종류 C</td><td rowspan="6">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류 Ce</td></tr>
<tr><td>종류 CF</td></tr>
<tr><td>종류 CW</td></tr>
<tr><td>종류 Cg</td></tr>
<tr><td>종류 S</td><td>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td></tr>
<tr><td>지급시기</td><td>매입시</td><td>-</td><td>환매시</td></tr>
</table>

주) 1. 환매수수료 부과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2. 선취판매수수료는 종류 수익증권별 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각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3.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후취판매수수료 부과시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등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7">지급비율(연간, %)</th></tr>
<tr><th>집합투자
업자보수</th><th>판매회사
보수</th><th>신탁업자
보수</th><th>일반사무
관리보수</th><th>기타
비용</th><th>총보수
및 비용</th><th>증권
거래비용</th></tr>
<tr><td>종류 A</td><td rowspan="10">0.60</td><td>0.50</td><td rowspan="10">0.03</td><td rowspan="10">0.015</td><td>-</td><td>1.145</td><td>-</td></tr>
<tr><td>종류 Ae</td><td>0.25</td><td>-</td><td>0.895</td><td>-</td></tr>
<tr><td>종류 C</td><td>0.90</td><td>-</td><td>1.545</td><td>-</td></tr>
<tr><td>종류 Ce</td><td>0.45</td><td>-</td><td>1.095</td><td>-</td></tr>
<tr><td>종류 CF</td><td>0.03</td><td>-</td><td>0.675</td><td>-</td></tr>
<tr><td>종류 CW</td><td>0.00</td><td>-</td><td>0.645</td><td>-</td></tr>
<tr><td>종류 Ag</td><td>0.35</td><td>-</td><td>0.995</td><td>-</td></tr>
<tr><td>종류 Cg</td><td>0.63</td><td>-</td><td>1.275</td><td>-</td></tr>
<tr><td>종류 S</td><td>0.20</td><td>-</td><td>0.845</td><td>-</td></tr>
<tr><td>지급시기</td><td colspan="4">매 3개월 후급</td><td>사유
발생시</td><td>-</td><td>사유
발생시</td></tr>
</table>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작성기준일 현재 이 투자신탁과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과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총보수・비용 비율은 기타비용 비율을 합산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이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원)

구 분	1 년	3 년	5 년	10 년

종류 A	216,372	460,265	717,419	1,469,940
종류 Ae	141,489	332,129	533,137	1,121,352
종류 C	158,363	487,457	834,448	1,849,858
종류 Ce	112,238	345,479	591,405	1,311,065
종류 CF	69,188	212,967	364,565	808,191
종류 CW	66,113	203,502	348,362	772,271
종류 Ag	151,739	363,680	587,146	1,241,084
종류 Cg	130,688	402,270	688,622	1,526,582
종류 S	86,613	266,603	456,381	1,011,735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총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보수·총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 A는 납입금액의 1.0%, Ae 및 Ag는 납입금액의 0.5%의 선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 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와 투자신탁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는 과표기준가격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계약기간	3년 이상
세제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인당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
소득 공제 방법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신청서에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판매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그 외의 투자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함
감면세액 추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수익증권 투자일(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수익증권 투자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추징받음.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투자자 본인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

	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해당사항 없음

나. 대차대조표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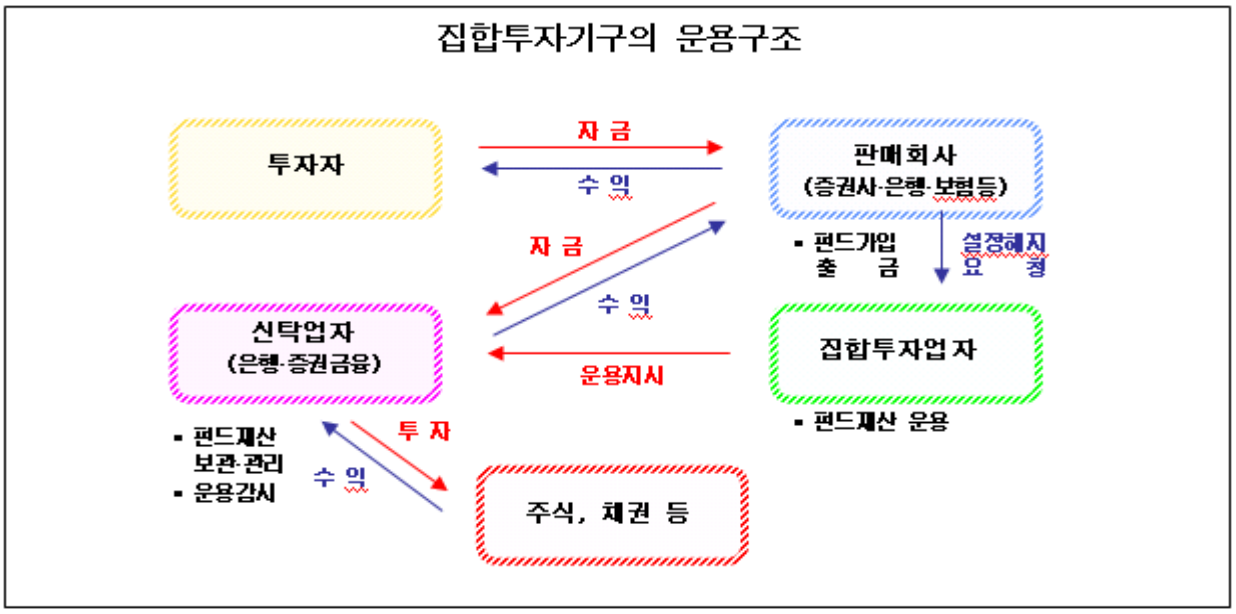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연락처 : 02-788-8400, www.i-ktb.com)
회사 연혁	1999. 9. 11 회사 설립(자본금 70 억원) 1999. 9. 22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운용회사 등록 2000. 1. 18 자본금 증자(자본금 150 억원) 2000. 1. 28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2007. 3. 13 자본금 증자(자본금 153 억원) 2007. 7. 25 자본금 증자(자본금 165.45 억원) 2008. 7. 2 태국증권사 지분취득(6.86%) 2009. 8. 26 자본금 증자(자본금 166.2 억원) 2013. 4. 10 태국증권사 추가 출자(13.45%) 2013.11. 4 대표이사 조재민 사장 취임 2013.12.30 자본금 증자(자본금 216.2 억원) 2014.11.04 자본금 증자(자본금 441.2 억원) 2015.09.23 자본감자로 인한 자본금 감소(자본금 152.1 억원) 2016. 1. 7 대표이사 김태우 사장 취임
자본금	152.1 억원
주요주주현황	KTB 투자증권㈜(98.62%)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ㅇ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 ㅇ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 ㅇ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17.01.01 ~'17.12.31	'16.01.01 ~'16.12.31	계정과목	'17.01.01 ~'17.12.31	'16.01.01 ~'16.12.31
유동자산	27,034	24,876	영업수익	27,545	19,954
고정자산	11,901	6,960	영업비용	20,180	15,247
자산총계	**38,935**	**31,836**	**영업이익**	**7,365**	**4,707**
유동부채	6,013	2,657	영업외수익	67	542
고정부채	86	186	영업외비용	96	193
부채총계	**6,099**	**2,844**	**경상이익**	**7,336**	**5,056**
자본금	15,214	15,214	특별이익	-	-
잉여금	16,912	13,822	특별손실	-	-
자본조정	5	5	**세전순이익**	**7,336**	**5,056**
기타포괄손익	705	-48	-	1,245	943
자본총계	**32,836**	**28,992**	**당기순이익**	**6,091**	**4,113**

라. 운용자산 규모

(2018.06.30 현재, 단위: 억)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	재간접				
수탁고	7,913	15,454	29,669	11,596	1,957	20,886	4,934	9,244	101,653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 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중소기업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1566-2566)
홈페이지 주소	http://www. ibk.co.kr
회사연혁등	1961. 8. 1 설립 자본금 : 47,576억원 종업원수 : 6,000명 총자산 : 855,193억

(2) 주요업무

- ㅇ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ㅇ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ㅇ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ㅇ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ㅇ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ㅇ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ㅇ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ㅇ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ㅇ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①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ㅇ 투자설명서가 관련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ㅇ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ㅇ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ㅇ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ㅇ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ㅇ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ㅇ 투자신탁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ㅇ 신탁업자는 위의 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책임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

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02-6714-4600)
홈페이지 주소	www.kebis.co.kr
회사연혁 등	2003. 4. 1. 설립 2003. 4. 30. 금융감독원 등록

(2) 주요업무

- ㅇ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ㅇ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ㅇ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ㅇ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관련법령 및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 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 02-721-53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reaap.com	http://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ㅇ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ㅇ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ㅇ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 ㅇ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 221 조제 7 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ㅇ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ㅇ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 ㅇ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ㅇ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ㅇ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ㅇ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ㅇ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ㅇ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ㅇ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ㅇ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ㅇ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ㅇ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는 관련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이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KTB자산 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i-ktb.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위의 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펀드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소 및 관리 정책

- 금융위원회의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 펀드 합병’, ‘모펀드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립한 정리계획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공모추가형 펀드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소규모 펀드 정리 이행실적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합니다.

► 발생 사전 억제 정책

- 신규 공모추가형 펀드 등록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시 판매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및 클래스 추가를 위한 경우이거나, 펀드의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펀드 설정 후 6개월간 펀드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펀드는 당사가 운용하는 대표펀드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2. 펀드 설정 1년 후에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해지’, ‘소규모 펀드 합병’, ‘모펀드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즉시 정리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이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i-ktb.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 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법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관련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이 호 및 9 호에서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 242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⑪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 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 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 선정기준
증권거래	주식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를 종합하여, 투자참고 항목(Sector별 Analyst Call, 리서치페이퍼, 기업탐방주선, 세미나, 스팟정보), 브로커능력 항목(매매체결능력, 수도결제능력), 매매수수료 항목(매매시스템의 합리성), 기타 항목(요청자료의 응대 등)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채권 등	분기별 평가점수에 의한 우수 거래증권사, 선물사 순위를 선정하여 거래하며 내부평가기준에 의한 매니저별 채점방식에 의합니다. 채권의 경우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 거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매매시에 최우선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장내파생	주식관련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능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 료), 프로그램 보유여부,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채권관련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능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료), 투자참고 항목(리서치,시황,세미나),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주체	KTB자산운용주식회사
투자목적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고객 신뢰확보를 위한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간 펀드 성과에 대한 공유장치 마련
투자시기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최초설정일에 일시 납입)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기간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

주 1)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액은 상기의 의무투자금액 외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의무투자기간 이전에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 2)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무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당연 해지사유 발생

②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주 3) 의무투자금의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 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회수할 예정이며, 1 회당 회수금액은 의무투자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다만, 의무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주 4) 의무투자기간 종료 1 개월 이전에 의무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 5) 투자금 환매시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6) 이 투자신탁이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15억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고유재산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산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등을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집합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관련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